

2023년도 제2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1. 8.(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대행),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대행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대행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대행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21건(안건번호 제2023-220739호~제2023-22255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20739호~220744호(순번 1번~6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20745호~220749호(순번 7번~11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 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20750호~220760호(순번 12번~22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60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79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

2.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이숙형 부장: 금일 심의안건은 30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계

시한 2,58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8개 게시물임.

(순번 1번 및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순번 1번~3번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의 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는 알림 사이트의 주소를 각 제공하고 있으며 순번 4번~6번은 최신 대체 URL 주소를 제공하고 있음.

순번 1번~3번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의 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는 알림 사이트의 주소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직접링크를 클릭하면 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는 주소 알림 사이트(해외서버 소재)로 연결되어,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소를 이용하여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어 웹툰 불법복제물을 감상할 수 있음.

순번 4번~6번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의 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고 있으며,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의 직접링크를 클릭하면 최신 대체 URL로 바로 연결됨.

직접링크가 게시된 원천사이트는 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가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인 것은 아니나,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의 대체 URL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하고 있는바,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 판단됨.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으로 판단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김경숙 위원: 순번 1번~3번, 순번 4번~6번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이숙형 부장: 순번 1번~3번은 여러 사이트를 거쳐 불법 사이트의 주소 알림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순번 4번~6번은 불법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됨.
- 김경숙 위원: 주소 알림 사이트를 거쳐 가지만, 어차피 정보는 불법 정보에 해당할 것임.
- 정경오 위원: 순번 4번~6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사안으로,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중인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링크 게시를 통해 불법복제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임. 이에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경숙, 김춘식 위원: 이견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6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번~1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 공유 게시물 총 5건임.
(순번 7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 번역하여 자막(.smi 파일 등)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국내에서 방영중이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중으로, 합법 시장에서 한국어 자막과 함께 감상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 중인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을 전제로 제작되어 있어,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의 이용 및 감상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

음. 특히 심의 대상 게시물과 같은 최신저작물의 경우 공표 초기에 불법복제 및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당해 심의대상 게시물은 광고 배너를 게시하지 않고 있어 영리를 추구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게시자가 해당 자막파일이 불법 복제된 영상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이라는 점 및 자막파일 전송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바, 침해의 고의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또한 블로그에 자막 파일은 소량이 게시되어 있으나 별도 게시물을 통해 ‘●●●●’에 백업시켜 냈고, 혹시 몰라서 블로거에도 백업은 시켜 냈습니다’등 게시물에 자막 배포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기존에 제작한 자막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파일을 제공 중인 점, 비록 자막파일은 번역물로서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게시물에 자막 배포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김경숙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에 있는 자막파일의 다운로드 횟수를 알 수 있는가? 해당 통계를 보면 이용 횟수를 알 수 있고 반복적인 침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임.
- 김태일 주임: 방문자 수는 확인 가능함. 전체 방문자 수는 약 ■■■■■ 정도이고, 하루 방문자 수는 ▽▽▽ 정도임.

- 김경숙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는 어떤 사이트인가?
- 김태일 주임: 포털사이트 '♠♠'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임.
- 정경오 위원: smi 파일 등으로 배포되는 자막파일은 영상물의 불법 복제물과 함께 이용해 음성, 자막을 싱크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 바임.
- 김경숙 위원: 동의함. 또한 해당 블로그를 살펴보면 ◇◇◇에 해당하는 자막파일 게시글을 보았을 때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작지 않다고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7번~11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번~2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3개 게시물임.

(순번 12번 및 1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음.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

입.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김경숙 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중이진 않지만,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김춘식, 정경오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2번~2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3번~182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450개 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기타, 방송, 출판/어문, 영화, 만화/웹툰, 게임, SW,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프레디의 피자가게'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88번은 영화 '프레디의 피자가게' 전체분량을 3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15. 개봉 예정인 해외 영화임. .

(드라마 '시크릿 인베이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11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시크릿 인베이션'의 전체분량을 54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06.21. ~ 2023.07.26.까지 디즈니플러스에서 독점 방영한 드라마임.

(출판 '조선 왕자가 천하를 요리하는 법'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31번은 웹하드에서 출판 '조선 왕자가 천하를 요리하는 법'의 전체분량을 3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2.09.20. ~ 2023.01.18. 연재한 한국 웹소설로 시리즈에서 서비스 중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순번 23번~1821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3번~182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23-220739호~220744호(순번 1번~6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20745호~220749호(순번 7번~11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20750호~220760호(순번 12번~2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20761호~222559호(순번 23번~182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15.

분과위원장 대행 김경숙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